

의안번호	2215010
의 퇴 인	서범수의원
회 답 일	2026.3.11.
추계번호	25B678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측량업자가 측량용역 완료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될 경우, 해당 자료의 접수 및 검토를 담당하는 위탁기관의 추가 재정소요는 시나리오별로 2027년 2억 8,200만원~4억 1,6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15억 700만원~25억 400만원으로 추계됨
- 시나리오 1: 향후 5년 동안 15억 700만원(연평균 3억 100만원)
 - 시나리오 2: 향후 5년 동안 25억 400만원(연평균 5억 100만원)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권한의 위임·위탁 (안 제105조제2항 제1호의4 신설)	시나리오 1 (평균가정)	282	292	301	311	321	1,507	301
	시나리오 2 (증가추세 반영)	416	456	499	543	590	2,504	501

- 주 1.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민간 측량용역의 발주 규모 통계가 부재하여 공공 측량용역 통계와 연관 산업인 건설업의 공공·민간 수주건수 비중을 적용하여 민간 측량용역 규모를 추정한 결과이므로, 향후 민간측량용역 실적 통계가 확보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5조제2항 제1호의4 신설 (권한의 위임· 위탁 등)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지적 소관청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1의4. 제10조의4 ¹⁾ 에 따른 측량용역 계약 관련 자료의 접수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1	안 제105조제2항 제1호의4 신설 (권한의 위임· 위탁 등)	○	• (추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추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측량업자가 측량용역 완료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될 경우, 해당 자료의 접수 및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 인력이 필요해짐에 따라 위탁기관의 인건비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산함
 - 현재 자료 확보가 가능한 공공 측량용역 건수와 연관 산업인 건설업의 공공·민간 수주건수 비중을 적용하여 전체 시장규모를 추산하였으므로, 향후 민간 측량용역 실적 통계가 확보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²⁾ 적용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 부칙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1) 안 제10조의4(측량용역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측량업자는 측량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측량용역을 완료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에 관련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2025.9.)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명목임금상승률(%)	3.3	3.2	3.3	3.3	3.3	3.3	3.3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측량업자의 측량용역 계약 관련 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탁기관에서 필요한 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추정함

- 본 추계에서는 현재 자료 활용이 가능한 공공측량용역 발주 실적과 측량용역 신고 실적치를 바탕으로 향후 예상되는 측량용역 신고건수를 추정함
 - 다만, 민간발주 측량용역 자료가 부재하여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연관 산업인 건설업의 공공·민간 수주건수 비중(2022~2023년 52.87%)³⁾을 적용하여 전체 시장규모를 추산함
- 최근 2개년간 공공측량용역 평균 발주건수는 32,213건이며, 측량업자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측량용역 실적은 최근 3년 평균 2,922건으로 개정안에 따라 측량용역 계약 관련 자료 제출이 의무화될 경우 현행 수준보다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측량용역 최근 3년간 평균 신고건수는 2,922건으로 연간 근무일수(246일) 기준 1일 평균 처리건수는 12건이며, 1일 평균 12건 처리에 약 120분이 소요되어 건당 처리시간은 10분으로 산정됨

[표 2] 측량용역 실적 현황: 2022~2024년

(단위: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평균
승인	2,419	2,684	3,243	2,782
반려	350	38	33	140
합계	2,769	2,722	3,276	2,922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3) 건설업 발주자별 수주건수 현황

구분(건)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26,719	25,434	23,226	20,119
공공	14,225	12,916	12,811	10,847
민간	12,226	12,251	10,087	9,005
공공비중	53.2%	50.8%	55.2%	53.9%

자료: 통계청 건설업 통계

[표 3] 공공측량용역 발주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공공		기본측량		지하시설물 등 공공		지적측량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	23,109	228,401	115	90,958	4,330	326,632	1,328	48,913	28,882	694,904
2023	29,511	259,243	148	108,491	4,635	280,594	1,250	43,494	35,544	691,822
합계	52,620	487,644	263	199,449	8,965	607,226	2,578	92,407	64,426	1,386,726
평균	26,310	243,822	131	99,724	4,482	303,613	1,289	46,203	32,213	693,363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물량) 본 추계에서는 공공측량용역 발주건수와 측량용역 신고 실적치를 바탕으로 향후 예상되는 측량용역 신고건수를 추정하며, 민간 부문을 포함한 전체 시장 규모를 추산하기 위하여 건설업 수주 통계를 대리 지표로 활용함

- (시나리오 1) 최근 2개년(2022~2023년)간 전국 추정 발주건수 평균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시나리오 2) 최근 3년간 신고된 실적치의 증가추세를 전체로 환산하여 매년 5,287건의 발주물량이 선형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공통 산출 기준: 연간 근무일 246일, 건당 처리시간 10분, 1인 근무시간 480분(전담인력)

□ (시나리오 1) 측량용역 발주건수가 최근 실적치의 평균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최근 2년간의 공공 측량용역 평균 발주건수(32,213건)와 건설업의 공공발주 비중(52.87%)을 활용하여 전체 시장으로 추정한 60,918건($32,213\text{건} \div 52.87\%$)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기존 신고건수(2,922건)를 제외한 58,006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은 4.91명으로 추계됨

[표 4] 소요인력 산출

구분	산출내역	필요인력
추가 필요인력 (전담인력, 참여율 100% 가정)	235.8건 ⁴⁾ /일×10분÷480분	4.91명

주: 추가 필요인력은 전담인력을 고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1일 가용시간 480분을 적용함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계산

- (인건비 단가) 추가 인원 4.91명에 대한 인건비는 「2025년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함

[표 5] 인건비 산정표: 2025년 기준

항목		직무별 투입공수(M/M)				
		직무	투입인원 (명)	투입기간 (개월)	투입률 (%)	월 평균임금 (원)
일상운영	측량용역 실적 신고 의무화	IT지원기술자	4.91	12.0	100	5,058,021
총 투입공수		(투입인원 × 투입기간 × 투입률, %)		58.95		
직접인건비(A) 합계		(직무별 투입공수×월평균임금)		298,164,213		
제경비(B)	A의 144%					429,356,466
기술료(C)	(A+B)×20%					145,504,136
인건비 (D=(A+B+C)×27.6%) (부가세 제외)						240,954,849
인건비 최종(D×(1+10%)) (부가세 포함)						265,050,334

주: 인건비 반영비율 27.6%은 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위탁수수료로 기 적용 중인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함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계산

- (시나리오 1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측량용역 발주건수가 최근 실적치의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 고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4) 하루 추가 처리가 필요한 대상은 58,006건(연간)/246일 = 235.8건(1일)

[표 6] 측량용역 추가 인원(시나리오 1: 평균 가정) 고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전체 측량용역 발주건수 추정치 (A, 건)	60,928	60,928	60,928	60,928	60,928	304,638
현행 신고수준 (B, 건)	2,922	2,922	2,922	2,922	2,922	—
추가 처리건수 (C=A-B, 건)	58,006	58,006	58,006	58,006	58,006	290,028
필요인력 수 ((C÷246일×10분) ÷480분, 명))	4.91	4.91	4.91	4.91	4.91	—
월평균임금(원)	5,389,962	5,566,187	5,747,615	5,934,957	6,128,406	—
측량용역 추가 필요 인건비 추정치 (백만원) ※ 시나리오 1: 평균수준 가정	282	292	301	311	321	1,507

주 1.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민간 측량용역의 발주 규모 통계가 부재하여 공공 측량용역 통계와 연관 산업인 건설업의 공공·민간 수주건수 비중을 적용하여 민간 측량용역 규모를 추정한 결과이므로, 향후 민간측량용역 실적 통계가 확보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계산

□ (시나리오 2) 측량용역 발주건수 증가추세를 반영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신고된 측량용역 수행실적은 전국 평균 발주물량(60,928건)의 약 4.8%(2,922건)로 매년 253.5건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고실적 증가추세가 전체 시장⁵⁾에도 동일한 비율로 반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전체 발주건수는 매년 5,286건(253.5건÷4.8%)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됨
- 인건비 단가는 [표 5]의 산정표를 적용하여 추산하며,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함

5) 전체 시장 측량용역 추정치^{2023년} 67,229건 = 35,544건(2023년 공공 측량용역)÷공공비중(52.87%)에 매년 5,286건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표 7] 측량용역 추가 인원(시나리오 2: 증가추세 가정) 고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전체 측량용역 발주건수 추정치 (A, 건)	88,371	93,657	98,943	104,229	109,514	494,714
현행 신고수준 (B, 건)	2,922	2,922	2,922	2,922	2,922	—
추가 처리건수 (C=A-B, 건)	85,449	90,735	96,021	101,307	106,592	480,104
필요인력 수 ((C÷246일×10 분)÷480분, 명))	7.24	7.68	8.13	8.58	9.03	—
월평균임금(원)	5,389,962	5,566,187	5,747,615	5,934,957	6,128,406	—
측량용역 추가 필요 인건비 추정치 (백만원) ※ 시나리오 2: 증가추세 가정	416	456	499	543	590	2,504

주 1.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민간 측량용역의 발주 규모 통계가 부재하여 공공 측량용역 통계와 연관 산업인 건설업의 공공·민간 수주건수 비중을 적용하여 민간 측량용역 규모를 추정한 결과이므로, 향후 민간 측량용역 실적 통계가 확보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계산

□ 개정안에 따라 측량업자가 측량용역 완료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될 경우, 해당 자료의 접수 및 검토를 담당하는 위탁기관의 추가 재정소요는 시나리오별로 2027년 2억 8,200만원~4억 1,6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15억 700만원~25억 400만원으로 추계됨

- 본 추계는 민간 측량용역의 발주 규모 통계가 부재하여 공공 측량용역 통계와 연관 산업인 건설업의 공공·민간 수주건수 비중을 적용하여 전체 규모를 추정한 결과이므로, 향후 민간측량용역 실적 통계가 확보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측량용역 추가 필요 인건비 추정치 (시나리오 1: 평균수준 가정)	282	292	301	311	321	1,507
측량용역 추가 필요 인건비 추정치 (시나리오 2: 증가추세 가정)	416	456	499	543	590	2,504

주 1.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민간 측량용역의 발주 규모 통계가 부재하여 공공 측량용역 통계와 연관 산업인 건설업의 공공·민간 수주건수 비중을 적용하여 전체 규모를 추정한 결과이므로, 향후 민간 측량용역 실적 통계가 확보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계산

IV. 부대의견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민간 측량용역의 발주 규모 통계가 부재하여 공공 측량용역 통계와 연관 산업인 건설업의 공공·민간 수주건수 비중을 적용하여 전체 규모를 추정한 결과이므로, 향후 민간측량용역 실적 통계가 확보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